

전세임대 입주신청서(신혼·신생아Ⅱ 유형)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010)	-	집전화()	-
혼인 및 출생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년	월 일
	②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년	월 일
신청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6,200만원 이하)			
소득·자산 미조회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신청인	(서명 / 인)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경남개발공사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가	평 점
①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단,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4점 3점 2점	()인	()점
②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발급관리번호로 발급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의 인정회차를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회	()점
③ 신청인의 시·군지역 연속 거주 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개월	()점
④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준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신청인 포함)	2점	(O , X)	()점
⑤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없음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1점	(O , X)	()점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잔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무단퇴거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절대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주소 이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하여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또는 공사로부터 실태조사 업무 수행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항력 조사를 위해 실거주를 확인**합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한 방문, 서류 및 사진을 요구할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 중복 해당자) 우리공사 및 타 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해지절차를 밟으셔서 **계약체결 시** 당해 임대주택 해지신청서, 퇴거확인서(기퇴거자의 경우) 등 **해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영수증을 공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시 입주가 불가**하며, 입주 후라도 대출 이력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 **확인하였습니다.**
-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중도해지가 어렵고 계약기간(최초 2년) 동안 거주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주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입주자 부담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개인사유로 퇴거(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퇴거일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상의하시고 반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우리공사에 정식으로 퇴거(이주)를 신청하셔야 하며,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반드시 전입 유지 및 실거주**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 주택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필히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간 만료 전 이주는 입주 후 6개월 이후 가능하며**, 이는 재계약 횟수에 산입되어 총 전세임대 지원이 기간이 줄어듭니다. **입주자의 귀책으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이주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지원한 **중개수수료, 법무법인 수수료 및 도배·장판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 주택 소유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이주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이주한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경매 등의 사유로 지원주택에 법원 통지서 등이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의 전세계약 외에 임대인과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되는 즉시 우리공사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면계약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우리공사와의 정식 계약에만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월세를 받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전대 시에는 즉시 계약 해지**되며,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 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잔금은 계약체결 후 공사 접수일로부터 최소 4주 후 지급 가능하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기간 중 계약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의 사망,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입주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등
- 국토교통부 및 우리공사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남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남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홀림서명 금지)**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 추가 세대원(4명 초과)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미숙지로 작성된 동의서 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작성예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 - □□□□□□	홍길동	홍길동
세대원		□□□□□□ - □□□□□□		홀림서명 금지
세대원		□□□□□□ - □□□□□□		
세대원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		원	[출자자]	
		아니오 ☐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아니오 ☐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예 ☐		원	[차주]	
		아니오 ☐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임장

본인은 수임인에게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2026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입주신청서'등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위임인(신청인)

성명 : (인) (인감날인 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첨부서류 1. 위임인 및 수임인 각각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본인 및 세대 분리된 자녀는 금회 모집하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법령의 취지를 감안 해당 주택에 입주 시 아래와 같이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를 입주 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세대주와의 관계

20년 동안의

신청인 : (인)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입주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세대주와의 관계

20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본인은 경남개발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과 관련하여 수임인에게
공동 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본인은 경남개발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과 관련하여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대표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정보· 금융정보	☐	대표신청인 및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대표신청인 및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대표신청인 : (인)

예비입주자 : (인)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